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87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김용태 · 서천호 · 이성권
서명옥 · 진종오 · 송석준
강명구 · 김성원 · 조정훈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

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1학년 학생. 다만, 학생이 해당 연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① (생략)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②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1학년 학생. 다만, 학생이 해당 연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